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관련
제 규정 현황 및 개선 방안

2016년 2월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관련 제 규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과제의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총괄책임자	이	근	택
연구원	이	영	규
	전	병	국
	김	태	완
	이	충	일

발 간 사

강릉원주대학교는 2015년 8월 27일 학칙을 개정하여 교수회와 교수평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법정 교수회가 9월 18일 출범하게 되었다. 학칙 제13장 제101조에 의거 교수회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학칙 제103조에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교수회는 대학의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교무회나 교수평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총장이나 교수회 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들을 심의하며,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교수평의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수평의회는 학칙 제·개정,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규정 제·개정 및 예·결산 등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 직무 사항이다. 한편 교수회 운영규정 제14조(재정)에 따르면 교수회 재정은 본교 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회 임원, 감사 및 사무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의 학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규정들이 명확하게 제정되지 못하여, 현재 교수회 운영 과정 중 교수회와 학교 집행부 또는 교육부 사이에 규정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수회의 예산심의권, 규정의 제·개정 심의 절차, 교수회 임원들에 대한 대학회계에서의 수당 지급 건, 그리고 교수평의회 정족요건 등의 사안들에 대하여 대학 집행부/교육부와 교수회간 명확한 유권해석 및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기 내용들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타 국립대학들에서의 학칙 및 제 규정 제정 현황과 교수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 대학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관련 규정들의 개선 및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016년 2월

연구책임자

이 근 택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교수회 관련 법규 및 규정.....	2
II. 연구 방법과 범위	5
1. 국립대학교 학칙 및 규정 조사.....	5
2. 설문조사.....	7
3. 연구의 범위.....	8
III. 규정 제·개정 절차	9
1. 조사배경.....	9
2. 전국 국립대학교의 규정 제·개정 절차 현황.....	13
3. 설문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20
4. 강릉원주대 규정 개선 방향.....	23
IV. 국립대학교의 예·결산 심의 의결권 현황	26
1. 조사 배경.....	26
2. 국립대학교의 학칙 및 교수회 관련 규정 상 예·결산 심의 의결권 조사.....	28
3. 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31
4. 강릉원주대의 예·결산 심의 관련 규정 개선 방향.....	36
V. 교수평의회 정족수 규정	39
1. 조사 배경.....	39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41
3. 타 국립대학교의 평의회 정족수 관련 규정 조사.....	44
4. 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48
5. 강릉원주대 규정 개선 방향.....	53

VI. 국립대학교의 교수회 임원 수당 지급.....	55
1. 조사 배경	55
2. 타 국립대학교의 교수회 임원 수당 지급 현황 조사.....	56
3. 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59
4. 강릉원주대 규정 개선 방향	61
VII. 맺는 말	62
VIII. 별첨 : 국립대학교 학칙, 교수회 및 평의원회 규정.....	64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대학이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대학인들이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인격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은 자유로운 진리탐구라는 학문적 자유의 측면에서 대학의 주체적 구성원인 교수들이 대학 자치에 책임을 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 현재 고등교육법 제6조에서는 국립대학교 학칙의 제·개정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서 교수회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2015년 8월 27일 개정된 학칙 제 1539호를 통하여 교수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 9월 18일 법정 교수회가 출범하였음.
- 학칙 제13장(교수회) 제101조(교수회), 제102조(단과대학 교수회), 제103조(평의원회), 교수회 운영규정 제2조(권한)와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무) 등에서는 교수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및 직무 등을 적시하고 있음. 또한 교수회 운영규정 제14조(재정)에서는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에서는 현재 교수회에 의한 예산심의권 및 규정 제·개정을 위한 최종 심의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수회 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그 외 교수회 관련 규정 상 평의원회 위임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운영 상 이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대의기구로서의 교수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수회의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조사 분석하고, 아울러 타 국립대학에서의 교수회 운영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교수회 관련 법규 및 규정

1)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제6조(학교 규칙)

-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 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1조(교수회)

-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 ⑥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8.27.>
 - 1. 이 대학교의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회에 심의 요청한다. <신설 2015.8.27.>
 - 1.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⑧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8.27.>
 - 1. 총장, 교수회장, 교수평의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재적 전임교수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 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3. 교무회, 교수평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4. 기타 총장이나 교수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⑨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27.>

제102조(단과대학 교수회)

-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과(부)장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 1. 학칙의 개정 또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 2.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 4. 학생지도,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 5. 소속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 6. 기타 소속 대학장 또는 수석평의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8.27.>

제103조(평의회)

-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회를 둔다.
- ② 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제2조(권한)

-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 임원과 감사,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총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재적 전임교원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교무회, 교수평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나 교수회 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회에 심의 요청한다.
1.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제2항 제1호의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직무)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단, 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회 의결을 거쳐 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소속교원 10분의 1이상, 평의원 4분의 1이상, 교수회장 등이 요청한 사항
 6. 교원 업적평가 기준·교원소청·교원복지 등 교원관련 사항
 7.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8. 대학·대학원·학과·부속시설(대학회계와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은 제외)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해임 건의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회가 위임한 교수회 관련 주요 사항
 2. 교수회 예·결산 및 규정(본회 포함) 제·개정에 관한 사항

II. 연구 방법과 범위

1. 국립대학교 학칙 및 규정 조사

- 2016년도 2월 29일 기준, <표 1>에 제시된 총 21개 국립대학교의 학칙 및 교수회 관련 규정을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수집 정리함.

<표 1> 교수회 관련 학칙 및 규정 제정 현황

대학	학칙	교수회 규정	평의원회 규정	규정명
강릉원주대	○	○	○	■ 교수회 운영 규정, 교수평의원회 규정
강원대	○	X	○	■ 평의원회 운영 규정
경북대	○	○	△	■ 평의원회 규정은 교수회 규정에 포함
경상대	○	○	○	■ 교수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공주대	○	○	△	■ 평의원회규정은 교수회 규정에 포함
군산대	○	X	○	■ 교수평의회 규정
금오공과대	○	○	○	■ 교수회 규정, 교수평의원회 운영 규정
목포대	○	○	○	■ 교수회 규정, 교수평의회 규정
부경대	○	X	○	■ 평의원회 규정
부산대	○	X	○	■ 평의원회 규정
순천대	○	○	△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안동대	○	X	○	■ 교수회 평의원회 규정
전남대	○	○	○	■ 교수회 규정, 평의원회 규정
전북대	○	○	△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제주대	○	○	○	■ 교수회 규정, 평의회 규정
창원대	○	○	○	■ 교수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충남대	○	○	△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충북대	○	X	○	■ 평의원회 규정
한경대	○	○	○	■ 교수회 규정, 교수평의회 규정
한국교통대	○	○	○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한밭대	○	X	○	■ 교수평의회 운영규정

○: 있음, △: 별도 평의원 규정이 없고 학칙이나 교수회 규정 내 조항으로 존재, X: 교수회란 명칭의 규정이 없거나 (대학)평의(원)회 규정으로 존재

- 교대, 과학기술대 및 법인화 대학 등은 일반 국립대학교와 대학의 체제와 운영 방법 등이 상이하어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조사대학에서의 교수회 관련 학칙 조항 및 규정 제정 및 개정일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음.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학들에서의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에 나타난 조사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 본 연구는 교수회 규정 제·개정절차, 국립대학교의 예·결산 심의의결권 등 최근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국립대학교에서 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구주체가 규정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립대학교의 제 규정의 개정일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

<표 2> 국립대학교 교수회 관련 제 규정 개정일

대학	학칙	교수회 및 평의원회 규정	규정명
강릉원주대	2015.08.27.	2015.08.27.	■ 교수회 운영 규정, 교수평의원회 규정
강원대	2015.08.31.	2010.02.22.	■ 평의원회 운영 규정
경북대	2015.07.15.	2011.12.16.	■ 평의원회 규정은 교수회 규정에 포함
경상대	2015.09.23.	2010.11.05.	■ 교수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공주대	2015.03.23.	2015.06.30.	■ 평의원회규정은 교수회 규정에 포함
군산대	2015.12.29.	2015.11.18.	■ 교수평의회 규정
금오공과대	2015.12.18.	2015.04.01. 2013.11.06.	■ 교수회 규정, 교수평의원회 운영 규정
목포대	2015.12.23.	2013.12.11.	■ 교수회 규정, 교수평의회 규정
부경대	2015.12.23.	2015.11.13.	■ 평의원회 규정
부산대	2015.09.23.	2015.07.22.	■ 평의원회 규정
순천대	2015.10.15.	2014.03.27.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안동대	2015.07.16.	2012.05.24.	■ 교수회 평의원회 규정
전남대	2015.11.01.	2015.07.30.	■ 교수회 규정, 평의원회 규정
전북대	2015.12.01.	2012.09.21.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제주대	2015.11.23.	2013.05.27.	■ 교수회 규정, 평의회 규정
창원대	2015.10.15.	2015.09.18.	■ 교수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충남대	2015.09.11.	2012.04.26.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충북대	2015.11.30.	2012.07.20.	■ 평의원회 규정
한경대	2015.09.08.	2013.11.08.	■ 교수회 규정, 교수평의회 규정
한국교통대	2015.10.21.	2012.06.20.	■ 교수회 규정 내 교수평의회 규정 포함
한밭대	2015.11.13.	2013.03.11.	■ 교수평의회 운영규정

2. 설문조사

- <표 3>에 나타난 20개 국립대학교의 교수회에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아래 <표 4>과 같은 설문조사지를 배포함으로써, 본교 포함 총 21개 국립대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3> 설문조사 대상 국립대학교

구분	대학	구분	대학	구분	대학
거점국립 대학	강원대	지역중심 국립대학	강릉원주대	미분류	부경대
	경북대		공주대		
	경상대		군산대		
	부산대		금오공과대		
	전남대		목포대		
	전북대		순천대		
	제주대		안동대		
	충남대		창원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합계	9개교		11개교		1개교
총대상학교					총 21개교

- 2016년 2월 12일까지 설문지에 미응답한 8개교(군산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에 대하여는 교수회장을 비롯한 교수회 임원진에게 설문지 내용에 대하여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음.
- 조사대상 국립대학교에 배포된 설문지의 내용은 <표 4>와 같음.

Ⅲ. 규정 제·개정 절차

1. 조사배경

- 고등교육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학칙에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학칙 제15장 제105조에서 학칙 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음(학칙 제105조 제1항). 총장은 발의할 때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칙 제105조 제2항).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5장 제105조(학칙의 개정)

- ①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 ② 총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을 보면 교수회는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음. 교수회는 의결로 「교수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을 확정하게 되어 있음(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제15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 규정

제2조(권한)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15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교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평의회 운영 규정을 보면 학칙의 제·개정(평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 제·개정(평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심의할 수 있음.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4조(직무)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단, 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회 의결을 거쳐 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소속교원 10분의 1이상, 평의원 4분의 1이상, 교수회장 등이 요청한 사항
6. 교원 업적평가 기준·교원소청·교원복지 등 교원관련 사항
7.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8. 대학·대학원·학과·부속시설(대학회계와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은 제외)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해임 건의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회가 위임한 교수회 관련 주요 사항
2. 교수회 예·결산 및 규정(본회 포함) 제·개정에 관한 사항

- 평의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데(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현재 학칙에는 「총장 발의 →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 → 총장의 공포」 순으로 규정되어 있어(학칙 제105조 제1항) 학칙이나 규정의 제·개정 절차상 교수평의원회가 어느 단계에서 관여하게 되는지 불분명함.
- 제 규범관리 규정 제11조(심의)에 의하면 제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은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제3항), 교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 여기서도 교수회에서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 교수회가 학칙상의 법정 교수회로 편재되어 있는 바, 학칙과 제 규범관리 규정 등에 가능한 한 조속히 교수회의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제 규범관리 규정 제11조(심의)

- 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은 해당부서에서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안을 한 소관부서의 장은 입안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을 관련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으로 부의(附議)한다.
- ③ 총무과는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입법예고 후 학내의견이 수렴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을 교무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 지침, 원칙, 기준 및 요령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 전국 국립대학교의 규정 제·개정절차 현황

1) 국립대학교의 규정 제·개정절차에 대한 내용

- 다른 국립대학교의 학칙, 교수회, 평의원회 등 규정에서 학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내용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국립대학교의 규정 제·개정절차에 대한 내용

대학	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
강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3조(평의원회 심의사항) 제1항 제3호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제8장 학칙개정 제101조-104조 ■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8조(심의 및 의결사항) 제1항 제3호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경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9조(교수회) 제3항 제1호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 제5장 학칙·규정 및 세칙 제·개정 제83-86조 ■ 교수회 규정 제9조(평의회의 업무) 제1항 제1호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경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4조(대학평의원회) 제4항 제2호 학칙 및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제7장 학칙개정 등 제103조-107조 ■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기능) 제1항 제2호 학칙 및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6(교수회) ■ 제23장 학칙개정 및 규정 제·개정(제123조-124조) ■ 교수회 규정 제19조(평의원의 기능과 총장의 재심 청구권) 제1항 제4호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제5호 별표1의 주요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6호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6조 (교수회) 제7항 제1호 학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8장 학칙개정(제110조) ■ 교수평의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제1호 학칙개정의 발의 및 심의
금오 공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4조(교수회) 제2항 1. 학칙의 제정과 개정 ■ 제5장 학칙개정 및 기타(제97조)

대학	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
목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0조(교수회) ■ 제6장 학칙 개정 절차(제125조) ■ 교수회 운영규정 제3조(심의·의결사항) 1. 총장임용추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교수평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5조(평의원회) 제2항 제3호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 제 6 장 학칙개정(제92-94조) ■ 평의원회 규정 제3조(심의사항) 제3호 학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부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9조(대학평의원회) 제4항 제2호 학칙의 개정 ■ 제5장 학칙개정 제85조 ■ 관련 규정 없음(대학평의원회 규정)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6조(교수회) ■ 제12장 학칙개정(제75조-제77조) ■ 교수회규정 제7조(심의사항) 제1호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3조(교수회 평의원회) 제4항 제1호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상위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회의 심의로 같음한다. ■ 제15장 학칙개정(제80조)
전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4조(평의원회) 제3항 제2호 학칙 개정 및 규정의 제정·개정 ■ 제5장 학칙 개정 및 기타 제82조-제83조 ■ 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능) 제1항 제2호 학칙의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34조(심의사항) 제1호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0장 학칙개정 제118조 ■ 교수회 운영규정 제13조(평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1항 제1호 학칙 의 제정과 개정의 심의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4조 (교수회) ■ 제15조(단과대학 등의 교수회의) 제5항 제1호 학칙이나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발의 ■ 제 5 장 학칙의 개정 제91조-92조 ■ 평의회 규정 제11조 (심의사항) 제1호 다목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창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35조(평의원회) ■ 제7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제100조-102조) ■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기능) 제1항 제2호 학칙 및 대학평의원회 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대학	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
충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9조(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제2항 제2호 학칙 및 제 반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발의 ■ 제7장 학칙개정 제96조-96조의2 ■ 교수회 규정 제11조(기능) 제1항 제6호 학칙 및 제 규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10조(교수회) 제7항 제4호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 ■ 제6장 학칙 개정 등(제124조) ■ 평의원회 규정 제6조(심의사항) 제3호 학칙 그 밖의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한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6조(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 제5장 학칙 개정(제87조) ■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규정 제12조(교수평의회) 제2항 제2호 학칙 및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9조(교수평의회) 제7항 2. 학칙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7장 학칙개정(제115조-116조) ■ 교수회 규정 제14조의 2(심의사항) 제3호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한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8조(교수평의회) 제2항 제1호 학칙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제6장 학칙개정(제90조) ■ 교수평의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회의 역할) 제2항 제1호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표 5>의 국립대학교 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6>과 같음

<표 6> 국립대학교의 규정 제·개정절차에 대한 요약정리

대학	학칙	규정	세칙
강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로부터 60일내 정 책심의위원회, 교무회의 및 평의원회의 심의 		

대학	학칙	규정	세칙
경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제·개정(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장회의 심의 ■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의회 심의
경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무회와 대학평의회를 거침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평의회 및 학무회의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이 정하는 주요 규정은 교수회 평의회의 심의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심의위원회, 교수회 및 교무회 심의 		
금오공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심의위원회, 교무회의 및 교수회 심의 		
목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심의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교수회의 대의기구의 심의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 및 교무회 심의 		
부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평의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최종 심의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교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교수평의회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2주 내 평의회의 심의 		
전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 및 학무회의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심의위원회, 평의회 및 학무회의의 심의 	
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의 심의 ■ 학사운영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무회의의 의결 		

대학	학칙	규정	세칙
제주대	■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및 평의회의 심의		
창원대	■ 교무회의의 심의	■ 교무회의의 심의	■ 관련부서의 협의
충남대	■ 구성원의 의견 청취	■ 구성원의 의견 청취	
충북대	■ 법제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	■ 학칙 개정 준용	
한국교통대	■ 규정심의위원회, 교무회의 및 전교교수회의		
한경대	■ 교수회의의 심의		
한밭대	■ 학무위원회의의 심의		

2) 규정 제·개정 심의절차에 관한 학칙 규정 분석

- 학칙에 나타난 규정 제·개정 심의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됨.

(1) 교수회(또는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간에 심의 절차가 명확한 경우

심의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부산대와 안동대가 있는데, 이 두 대학 간 심의순서는 서로 다름. 부산대 학칙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최종 심의’로 나타나 있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 교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 순서로 되고, 안동대에서는 반대로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로 되어 있어 교무회의의 심의 → 평의원회의 순서임.

(2) 교무회의 또는 교수회만 관여하는 경우

규정 제·개정에 교수회만 관여하는 대학으로는 경북대, 순천대, 한경대의 3개교가 있고, 반대로 교무회만 관여하는 대학으로는 창원대, 한밭대, 충북대 3개교가 있음. 그런데 교무회만 관여하는 것으로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원대¹⁾, 한밭대²⁾,

충북대³⁾ 3개교의 경우 교수회 규정에서는 교수회가 학칙이나 규정의 제·개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교수회사 학칙이나 규정의 제·개정절차에 관여하는지,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관여하는지는 불분명함.

(3) 교무회의와 교수회가 모두 심의에 관여하는데 교무회의 → 교수회 순인지 반대로 교수회 → 교무회의 순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학으로는 강원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경상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등 11개교가 있음. 만약 관련 규정 내용 중 ‘교무회의 및 평의원회’를 교무회의 → 평의원회의 순으로 해석한다면 강원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경상대 등 6개교가 이에 속하고, “교수회 및 교무회”로 된 규정을 교수회 → 교무회의 순으로 해석한다면 이에 공주대, 군산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등 5개교가 이에 해당됨.

상기 학칙의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음.

- 1)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학칙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학칙에서는 학칙개정안은 「학칙개정안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학칙 제100조 제4항),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총장은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학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한 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고 규정하여(학칙 제101조 제1항) 교무회의만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절차에 관여하고 대학평의원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분명함.
- 2) 한밭대는 교수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서 교무·학생 분과위원회에서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교수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제1호). 학칙에서는 학칙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학칙 제90조 1항), 「학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음(학칙 제90조 제2항). 이 규정들을 보면 교수평의원회규정상으로는 평의원회가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에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칙에서는 학무위원회만 관여하도록 되어 있음. 실제로 교수평의원회는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에 관여하는지 관여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불분명함.
- 3) 충북대의 경우 평의원회 규정에서는 「학칙 그 밖의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평의원회 규정 제6조 제3호), 학칙을 보면 「학칙개정안은 법제심의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충북대 학칙 제124조 제3항), 학칙 외 제 규정의 제·개정에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충북대 학칙 제124조 제4항). 따라서 평의원회 규정상으로는 평의원회가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에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칙에서는 교무회의만 관여하도록 되어 있음. 실제로 교수회가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에 관여하는지 관여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불분명함.

<표 7> 학칙 상 학칙 제·개정 절차

내용		해당 대학	
교수회 또는 교무회의만 관여	교수회만 관여	경북대, 순천대, 한경대	
	교무회의만 관여	창원대, 충북대, 한밭대	
교수회와 교무회의가 관여	관여순서가 명확한 경우	교수회 → 교무회의	부산대
		교무회의 → 교수회	안동대 ⁴⁾
	관여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불분명		충남대	

※ 학무회의, 학장회의, 교무회의는 모두 교무회의로 함.

※ 교수회,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는 모두 교수회로 함.

4) 안동대의 경우 학칙상으로는 교무회의를 거쳐 교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학칙 외 규정 등은 교수회를 거친 후 교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고 조사됨. 안동대에서 작성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2016년 2월 기준) 교무회의 이후 교수회 평의회에서 규정 제·개정안을 심의하고자 규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이라고 답변해 옴.

3. 설문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 학칙으로 파악한 결과 창원대, 충북대, 한밭대에서는 교무회의만 학칙이나 규정 제·개정절차에 관여하지만 교수회 규정에 따르면 교수회도 학칙이나 규정 제·개정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교수회와 교무회의가 규정 제·개정에 관여하지만 그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강원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경상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와, 학칙에는 ‘구성원의 의사를 묻는다’ 라고만 되어 있는 충남대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음.
-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음.

<표 8> 설문조사 결과

구분	학교	설문조사 내용
학칙상으로는 교무회의만 관여하는 대학	창원대	교수회 → 교무회의
	충북대	불분명함
	한밭대	교수회 → 교무회의
교무회의 및 평의원회로 명시된 대학	강원대	교무회의 → 교수회
	금오공과대	교무회의 → 교수회
	목포대	교무회의 → 교수회
	제주대	교무회의 → 교수회
	한국교통대	교무회의 → 교수회
	경상대	교무회의 → 교수회
교수회 및 교무회로 명시된 대학	공주대	불분명함
	군산대	불분명함
	부경대	불분명함
	전남대	교수회 → 교무회의
	전북대	교수회 → 교무회의

- 설문조사로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우리 대학 본부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함. <표 9>는 우리 대학 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임.

<표 9> 우리대학 본부에서 제공한 국립대학교 규정 제·개정절차 내용

대학명	심의 절차	비고
강원대	각종위원회 → 교무회의 → 평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는 선출직+당연직(총장 위촉: 처장, 사무국장, 행정본부장)으로 구성
경북대	각종위원회 → 평의회 → 학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 ■ 학장회는 우리대학의 교무회
경상대	각종위원회 → 학무회 → 대학 평의회(교원, 직원 등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심의
부산대	각종위원회 → 평의회 또는 대학평의회(교원, 직원 등 구성) → 교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 ■ 일반규정은 평의회, 학칙은 대학평의회 심의 ■ 평의회, 대학평의회 심의결과는 교무회 심의시 구속력 없음
충남대	각종위원회 → 교수평의회 → 학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 ■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평의회는 미구성 ■ 학무회의는 우리대학의 교무회
충북대	각종위원회 → 교수평의회 → 교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 ■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평의회는 미구성
전남대	각종위원회 → 평의회(교원, 직원 등 구성) → 학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대의기구인 이사회는 교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심의 ■ 학무회의는 우리대학의 교무회
전북대	각종위원회 → 평의회 → 학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 ■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평의회는 미구성 ■ 학무회의는 우리대학의 교무회
제주대*	각종위원회 → 학무회 → 평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무회는 우리대학의 교무회 ■ 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로서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2명 포함
부경대	각종위원회 → 평의회(교원, 직원 등 구성) → 교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심의
공주대	각종위원회 → 평의회 → 학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 ■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평의회는 미구성 ■ 학무회의는 우리대학의 교무회
안동대	각종위원회 → 교무회 → (평의회: 학칙인 경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 ■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평의회는 미구성 ■ 학칙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규정 등은 교무회가 최종 의결

* 교수회 대의기구 또는 직원 등이 포함된 대학 평의회가 최종 심의기구인 경우임

- 상기 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음.

<표 10> 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분석 결과

내용		해당 대학
교수회 또는 교무회의만 관여	교수회만 관여	순천대(1개교)
	교무회의만 관여	한경대 ⁵⁾ (1개교)
교수회와 교무회의가 관여	교수회 → 교무회의	공주대 ⁶⁾ , 부경대 ⁷⁾ ,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⁸⁾ , 충북대 ⁹⁾ , 한밭대 ¹⁰⁾ (9개교)
	교무회의 → 교수회	강원대, 경북대 ¹¹⁾ , 경상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제주대, 안동대, 한국교통대(8개교)
	관여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군산대 ¹²⁾ (1개교)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정 제·개정을 교무회의를 거친 후 교수회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9개교, 교수회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8개교, 교수회만 관여하는 경우가 2개교로 조사대상 대학 중 교수회에서 최종심의하는 학교가 1개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 5) 한경대의 경우 “우리 대학 교수회는 규정 제·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안의 경우(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내용을 교수회에 알리고 심의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학칙내용과 다른 답변을 해 줌. 물론 학칙 규정은 학칙개정에 관한 것이므로 학칙개정은 교수회만 관여하고, 규정개정은 교무회에서만 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칙과 달리 교수회에서는 학칙개정이나 규정개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음.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의 답변에 따라 규정개정에서는 교수회에 심의권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다만 학칙개정은 학칙에 따라 교수회에 심의권이 있는 것으로 봄.
- 6) 공주대의 경우 학칙상으로는 그 순서가 불분명한데, 본부측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교수회→교무회의로 되어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따름.
- 7) 부경대의 경우 학칙상으로는 그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나 본부측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교수회→교무회의로 되어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따름.
- 8) 충남대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구성원의 의견청취만 규정되어 있음. 본부측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교수회→교무회의로 되어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따름.
- 9) 충북대는 학칙상으로는 교무회의만 관여하지만 교수회 규정에서는 교수회도 관여함. 설문조사 내용이 불분명하여 본부측 자료에서는 교수회→교무회의로 되어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따름.
- 10) 한밭대의 경우 “2015년 10월 27일 이전에는 학무위원회(교무회)를 거친 이후에 심의하였고, 교수평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27일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바꾸는 규정이 발령되었음”이라고 답변해 줌.
- 11) 경북대의 경우 학칙상으로는 교수회만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경북대 학칙 제83조, 제84조), 본부측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교수회를 거쳐 교무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설문조사에서는 “교무회의를 거친 후 교수회에서 심의한다”고 답변해 줌. 본 보고서에서는 학칙과 다르지만 본부측 자료와 경북대측의 설문조사 내용이 일치하므로 이에 따라 교무회의를 거친 후 교수회로 작성함.
- 12) 군산대의 경우 학칙상으로는 그 순서가 불분명한데, 설문조사에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 확정 및 공포 이전에 교수회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로 되어 있음”이라 하여 설문조사 후에도 불분명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결과보고) 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정을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되어 있어 교수회의는 정확히 어디 단계에서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4. 강릉원주대 규정 개선 방향

1) 우리 대학의 규정 내용

- 우리 대학은 학칙에서는 학칙의 제·개정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규정과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제 규범관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 규정화 절차는 다음과 같음(제13조 제1항). 그러나 제규범 관리 규정은 교수회가 법정화된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 교수회의 심의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표 11> 우리 대학의 제규정화 절차

구분	입안 필요성 검토	관련 위원회 검토, 심의	발 의	입법 예고	규정심의 위원회 심의	교무회 심의	공 포
학칙	○	○	○	○ (10일 이상)	○	○	○
규정, 시행세칙, 내규	○	○	○	○ (5일 이상)	○	○	○
요강	○	○	-	-	-	○	-
지침, 원칙, 기준 및 요령	○	※	-	★	-	※	-

※ : 지침, 원칙, 기준 및 요령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제5항)

★ : 총장은 필요한 경우 지침, 원칙, 기준 및 요령을 입법예고하여 학내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 <개정 2009.12.24>

- 관련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없을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지휘감독 지위 하에 있는 부서에서 입안을 할 경우에는 소관부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 개선안

- 다른 대학의 사례를 보면 교무회의에서 최종심의권을 갖는 경우보다는 교무회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평의원회에서만 심의하는 경우 포함)가 우세함(<표 10> 참조).
- 우리 대학의 학칙과 제 규범관리 규정에서 교수평의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표 12>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표 12> 우리 대학의 규정 제·개정절차에 대한 개선안

현행	개정(안)
제105조(학칙의 개정) ①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105조(학칙의 개정) ①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와 교수평의원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한다.
신설	제105조의2(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은 학칙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표 13> 우리대학의 제 규범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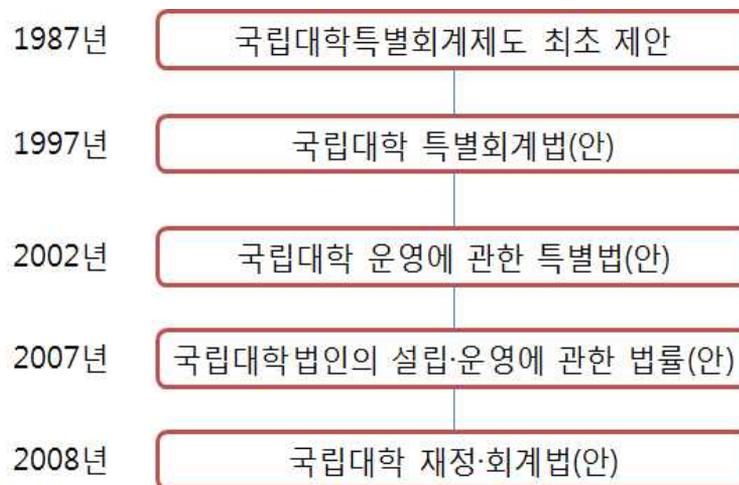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11조(심의) 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은 해당부서에서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안을 한 소관부서의 장은 입안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을 관련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으로 부의(附議)한다. ③ 총무과는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입법예고 후 학내의견이 수렴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현행	개정(안)
<p>④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규범안(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을 교무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⑤ 지침, 원칙, 기준 및 요령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p>	<p>⑤ <u>교무회의를 통과한 규범안 중 학칙과 규정은 교수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p> <p>⑥ 지침, 원칙, 기준 및 요령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할 수 있다.</p>

IV. 국립대학교의 예·결산 심의 의결권 현황

1. 조사 배경

- 2015년 이전까지 국립대학교는 기존의 기성회비(수업료와 등록금)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각 대학별로 학칙 등의 자체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이는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은 상태로 각 대학에서 관행적이고 자율적으로 제정된 규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거부 사태 및 반환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음.
- 2014년 이전부터 국회 및 교육부 등에서는 국립대학교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명목상 근거가 있는 관계 법령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예를 들어 서울대나 인천대처럼 법인화된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처럼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 의한 ‘교육개혁종합구상’에 따라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와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은 법령들의 제정이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립대학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향이 있음.
- 2010년부터 시작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2013년

7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을 기초로 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지난 2014년 기성회회계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2014년 7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학법안’ 을 각각 발의하였음.

- 2015년 3월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217호, 2015. 3. 13. 공포·시행)(이하 ‘재정회계법’)이 제정됨. 이와 더불어 재정·회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비등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64호, 2015. 6.11. 제정·시행)’ 을 정함.
- 2015년 3월에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규칙’ 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우리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교에 학칙 개정과 재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전환하여 근거 있게 집행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전국 국립대학교는 교육부의 행정 지침에 따라 재정위원회 규정을 2015년 7월 전후로 제정하였는데,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예·결산 편성에 관한 심의 및 의결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더불어 동 법률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재정위원회 규정중 제2조는 다른 법률 및 규정과의 역학 관계를 다룬 것으로써, 각급 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적시하고 있음.
- 한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법 제정 취지로서 ‘자율성’ 과 ‘효율성’ 을 국립대학교에 보장하여야 할 것임.

2. 국립대학교의 학칙 및 교수회 관련 규정 상 예·결산 심의 의결권 조사

- 강원대를 비롯한 총 9개의 거점대학과 공주대를 비롯한 지역대학 11개 등 총 20개 국립대학교에서의 예·결산 심의 의결권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우리 대학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예·결산의 심의 절차 및 방향을 확립하고자 함.
- 국립대학교 학칙 및 교수회 또는 교수평의회에서 명시된 예·결산 심의권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음.

<표 14> 국립대학교 학칙 및 교수회 또는 교수평의회 예·결산 심의권

대학	학칙/교수회/평의회 규정 예·결산 심의	교무회 심의
강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3조(평의회 심의사항) 제1항 5.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평의회 운영규정 제8조(심의 및 의결사항) 제1항 5. 기성회계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없음
경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9조(교수회) 제3항 예산과 결산 ■ 교수회 규정 제9조(평의회 업무) 제1항 2. 예산과 결산 	없음
경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4조(대학평의회) 제4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학평의회 규정 제2조(기능) 제1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없음 (학무회)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6조(교수회) ■ 교수회 규정 제19조(평의회의 기능과 총장의 재심 청구권) 제1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없음 (학무회의)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6조 (교수회) ■ 교수평의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3. 예산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협의 	제18조 (교무회) 제4항 5. 각 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심의(재정위원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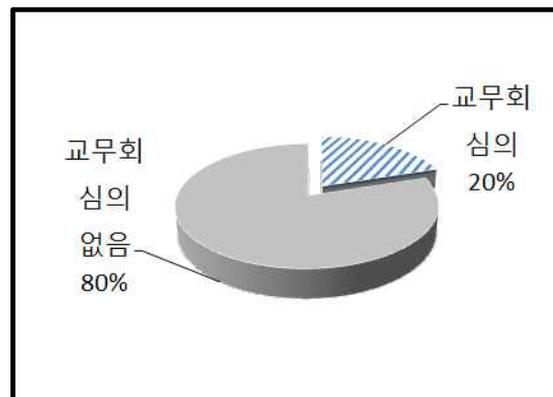
대학	학칙/교수회/평의원회 규정 예·결산 심의	교무회 심의
금오 공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4조(교수회) 제2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제 15 조(교무회의) 제4항 5. 예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목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0조(교수회) ■ 교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의결사항) 3.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없음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5조(평의원회) ■ 예·결산 심의조항 없음(평의원회 규정 제3조(심의사항) 7.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중 4분의 1 이상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없음
부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9조(대학평의원회) 제4항 8. 의장이나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예·결산 심의조항 없음(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심의사항) 제1항 7. 의장이나 재적 대학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없음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6조(교수회) 제3항 1.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교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예·결산 심의조항 없음(교수회 규정 제7조(심의사항) 2.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교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없음 (학무회)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3조(교수회 평의원회) 제4항 2. 교육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 예·결산 심의조항 없음(교수회 평의원회 규정 제2조(임무 및 권한) 제1항 학칙 제13조 제4항의 사항을 심의) 	없음
전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14조(평의원회) 제3항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 ■ 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능) 제1항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 제4항 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연구경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생활/신용협동조합회계 등의 운영 계획과 시행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없음 (학무회)
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34조(심의사항) 7. 기타 학장 또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교수회 운영규정 제13조(평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1항 2. 예·결산 등 중요 재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없음 (학무회의)

대학	학칙/교수회/평의원회 규정 예·결산 심의	교무회 심의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4조(교수회) ■ 평의회 규정 제11조(심의사항) 1. 마. 예산편성·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없음 (학무회)
창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35조(평의원회) ■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기능) 제1항 3. 대학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교무회의) 제4항 5. 예산에 관한 사항
충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9조(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제2항 6. 단과 대학·전문대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수회 규정 제11조(기능) 제1항 10. 기성회회계의 예산 편성에 관한 기본사항 	없음 (학무회의)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10조(교수회) 제7항 3. 학교 예산 및 결산 ■ 평의원회 규정 제6조(심의사항) 5. 예산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없음
한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6조(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 예·결산 심의조항 없음(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규정 제12조(교수평의회) 제2항 1. 대학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없음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9조(교수평의회) 제7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수회 규정 제14조의 2(심의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0조(교무회의) 제4항 7. 교수평의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한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8조(교수평의회) ■ 교수평의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회의 역할) 제4항 1.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없음 (학무위원회)

3. 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1) 교무회의 예·결산 심의 의결권 분석

- 재정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조사된 20개 대학에서 학칙이 2015년 7월 전후로 모두 개정되어 재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종래 대학 행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또는 교무회의, 학무회, 학무위원회, 이하 교무회로 통칭)에서 예·결산 심의와 기성회에서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
- 학칙상 교무회에서 예·결산 조항이 삭제되었거나 없는 대학들은 조사대상교의 약 80%(강원대를 비롯한 총 16개의 대학교)에 해당하였는데, 단, 군산대, 금오공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4개 대학들에서는 2016년 2월 현재 교무회에 예·결산 심의 조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국립대학교 교무회에서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 비율

- 이와 비교하여 우리 대학은 학칙(2015. 8. 27.) ‘제24조(교무회) 제4항 7. 기성회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교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그러나 이 조항에서 보면 ‘기성회 예산’이란 자구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유명무실하여졌음.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상기 학칙 중 교무회에서의 심의 사항에서 기성회 예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6년 3월 14일 입법예고된 상태임.

2) 학칙과 교수회, 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심의 의결권 분석

- 부산대를 비롯한 순천대, 안동대, 한경대, 부경대에는 학칙과 교수회, 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심의 관련 조항이 없음. 이는 추측하건데 해당 대학에서의 예·결산 심의 기능이 없거나 다른 단서 조항(예를 들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총장이나 교수회 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근거로 이에 부합되는 심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처럼 조사한 75%의 대학교에서는 학칙 및 교수회 또는 평의원회에서의 예산 관련한 심의권이 있음. 상기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칙은 대부분 재정회계법이 제정된 이후 공주대를 제외하고 2015년 7월 이후 모두 개정되었음.



<그림 2> 국립대학교 학칙/교수회/교수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심의 권한 비율

- 그러나 학칙 개정에 따른 관련 부속 규정들로서 교수회와 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심의 권한이 있는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기준 약 60%에 해당하는 대학들에서 관련 규정 조항들이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대학 내 최상위 규정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위 규정 또는 부속규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또한 상기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 7월 전후의 학칙 개정에 따른 교수회와 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심의 권한이 부여된 대학들은 전남대를 비롯하여 창원대, 금오공과대, 군산대, 부경대, 부산대 등 총 6개교에 불과하여 조사대상교 중 약 30%의 대학에서만 교수회와 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규정

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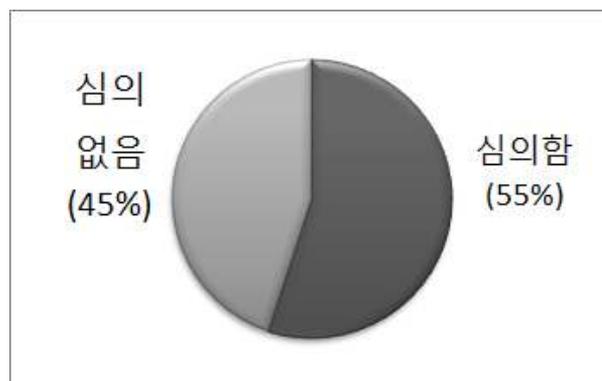
- 특이하게 전남대의 경우는 현재 평의원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회계, 산학협력단 간접연구경비, 발전기금, 신협회계에 대한 운영 계획 및 시행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조항 등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음.
- 아울러 강원대를 제외한 19개 대학들은 교수회나 평의원회가 예·결산 심의 권한만 갖고 있지만, 강원대의 경우 의결권도 평의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교수회나 평의원회 규정이 재정회계법이 발효된 이후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현재 내규에 따라 어떻게 대학의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음.

<표 15> 교수회/평의원회에서의 심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	교수회/평의원회에서의 대학의 예·결산 심의
강원대	■ 평의원회에서 기성회계와 마찬가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총장과 합의
경북대	■ 미정. 다만 재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교수회 예결위가 관여할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하고 있는 중. 2015년 7월에 본부와 원칙적인 문제에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
경상대	■ 심의함
공주대	■ 심의 없음. 아울러 직무대행 체제라서 아직 미정
군산대	■ 심의 없음. 교수회 부회장이 위원 참여
금오공과대	■ 재정위원회 회부 전 교수회에서 검토 함. 산학협력단 회계는 심의함
목포대	■ 재정위원회 개최 전 검토함(심의 기능)
부경대	■ 심의 없음. 단, 교수회장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이며, 실무위원회를 두어 대학본부 3인과 교수회 추천 3인, 과장 1명이 사전 조율함
부산대	■ 심의 없음. 단 교수회 추천 3인 참여
순천대	■ 재정위원회 개최 전 심의
안동대	■ 심의 없음
전남대	■ 재정위원회 개최 후 심의
전북대	■ 심의함
제주대	■ 심의 없음. 단 예산안 편성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대학	교수회/평의원회에서의 대학의 예·결산 심의
창원대	■ 심의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평의원회 보고 후 의견제출하는 형태를 취함
충남대	■ 심의함
충북대	■ 재정위원회 개최 전 심의
한경대	■ 심의 없음
한국교통대	■ 재정위원회 개최 전 심의
한밭대	■ 재정위원회 심의 이전에 예산분석심의위원회(기획처 주관)에 교수평의회 대표(부의장 1, 사무처장 1, 평의원 1)가 심의위원으로 참여

- <표 15>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회나 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심의 권한이 있는 대학은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대를 비롯하여 조사 대상교 중 약 55%를 차지함(단, 심의 대신 ‘검토’ 라고 응답한 금오공과대와 목포대 포함한 결과임). 반면에 45%에 해당하는 대학들에서는 예·결산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대학들은 재정위원회에 직접 혹은 교수회 추천 위원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국립대학교 교수회/교수평의원회에서의 예·결산 심의 비율

- <그림 3>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류하여 보면, 9개의 거점대학 중에서 6개 대학은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으나, 3개 대학은 조정 중이거나 미정, 혹은 다른 위원회를 통해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또한, 지역중심대학 중 5개 대학은 예·결산 심의를 수행하지만, 나머지 6개 대학은 심의 권한조차 없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 대학과 마찬가지로 아직 교수평의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하지 않고 있는 타 대학들도 교수회에서 추천된 교수들이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교수회에서 2인의 교수를 추천함. 대부분의 대학에서 재정위원장은 외부인이 맡고 있는데 반하여 부경대에서는 교수회 회장이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임.
- 거의 모든 대학이 예·결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되 의결권한은 없음.

4. 강릉원주대의 예·결산 심의 관련 규정 개선 방향

-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평의회에 예·결산 심의권이 정식으로 부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집행부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 7월 16일 교육부 대학정책과에서 시행된 공문 제6212호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학 내 다른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음” 이라고 교육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음.

□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정위원회는 대학회계의 재정 및 회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종 기구로,

-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회계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대한 조속히 구성

※ 법령상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학 내 다른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음.

— < [참 고] 재정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 > —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투자 계획에 대한 사항, △재정·회계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에 관한 사항 등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임. 그러나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 내 다른 기구에서의 심의검토 권한마저 제한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고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판단됨.
- 한편, 헌법 제31조와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립대학과 재정회계의 제정 목적은 국립대학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함임. 따라서, 대학 구성원의 대의기구인 평의원회에서 대학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학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기도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제24조(교무회)

④ 교무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대학, 학과(부), 부속시설, 각종위원회 설·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업, 졸업 등 제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수채용방침,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금지급 학생후생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성회 예산에 관한 사항
8. 전체교수회, 평의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상기의 규정 제4항 제7호는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문화된 내용으로서 대학회계법과 재정위원회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지난 2015년 8월 이후 삭제되었어야 하므로 향후 관련 조항의 학칙 개정이 필요함.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칙 제101조(교수회) 제7항 제2호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무) 제1항 제4호에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음. 특히 이들 조항들은 2015년 7월 29일에 제정된 우리 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공포된 이후에 개정, 신설되었음. 따라서 학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면 우리 대학에서 교수회 및 평의원회가 예·결산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판단됨.

학칙 <개정 2015.8.27.>

제101조(교수회)

-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정 2015.8.27.>

제4조(직무)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대를 비롯하여 설문조사 대상교의 약 55% 이상의 대학에서 교수회나 평의원회가 2016년 2월 현재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거점대학들만 살펴보면 약 66%의 학교에서 예산안을 재정위원회 개최 전후로 심의함.
-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사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예·결산 심의권 관련 규정을 다음 1안 또는 2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16> 우리 대학의 예·결산 심의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1안)
학칙 제101조(교수회)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2.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학칙 제101조(교수회)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2.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무)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무)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 (2안)
학칙 제101조(교수회)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2.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학칙 제101조(교수회)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2. 재정위원회 회의 전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무)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4조(직무)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재정위원회 회의 개최 15일전(날짜는 임의변경 가능)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V. 교수평의회 정족수 규정

1. 조사 배경

- 우리 대학에서는 2015년 8월 27일 학칙 제101조(교수회), 제102조(단과대학 교수회), 제103조(평의회)에 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교수회가 학칙상의 기구로 발족됨.
- 현재 우리 대학의 교수회가 학칙 상 법정기구로 인정되어, 학칙, 교수회운영규정, 평의회 규정 등이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학칙과 일부 규정 간 상충 및 관련 조항의 미흡 등과 해석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향후 교수회의 운영 상 합의 또는 결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시비가 야기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 판단됨.
- 교수회 및 평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와 관련된 정족수에 대한 규정으로 교수회 운영규정 제 11조와 교수평의회 규정 제11조가 있음.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제11조(의사 및 의결)

- ①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파견, 휴직, 출장, 연구년 중인 교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⑤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수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제11조(의사 및 의결)

본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장 인정, 정족수(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와 회상회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 따라서 위임장, 정족수 등과 관련된 현재의 우리대학 교수회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타 국립대학의 현황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및 판례를 분석하여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의 정족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1) 위임장

- 위임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사결정 등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임.
-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2항은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대리인에게 출석권 및 결의권을 위임할 수 있고, 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임장은 총회 등 회의의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나 위임장이 남용될 경우 소수 인원 에 의하여 회의가 진행되고 중요한 안건이 결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 대학에서는 법정 교수회 출범과 함께 개정된 평의원회 규정에서 위임장과 관련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는 평의원의 자발적인 참석 유도나 회상회의 등을 통하여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자발적인 참석과 화상회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의원의 관심도의 저하나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평의원회의 개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될 수 있음.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평의원회 규정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교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조문의 명문화가 필요함.

2) 정족수(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정족수는 평의원회의 의사를 진행시키거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음. 정족수는 합의체와

안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의결정족수는 성질상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정족수는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의사정족수는 평의원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의 수로서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위원이 출석하여야 회의는 의사진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의사정족수의 회원이 계속 재석을 하여야 함. 의사정족수는 규정 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통상 사회적 관행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이는 회의의 성립요건 및 계속요건이라고 하며, 성립정족수 또는 출석정족수라고도 함.
- 의결정족수는 회의 안건의 결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구성원의 찬성표수를 의미 함. 일단 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결정사항은 개별 구성원의 의사표시가 아닌 전체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에게도 구속력을 가짐.
- 재적위원(평의원)은 현재 교원(평의원)로서의 직을 갖고 있는 교원(평의원)만을 의미하며, 해임 및 자격상실, 사임 등에 의한 퇴임과 임기만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평의원은 제외됨. 재적평의원은 당해 평의원회에서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받아 취임된 자로서 그 임기 중인 자를 말함.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본 회의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만 규정되어 있어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음. 반면,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에서는 ‘파견, 휴직, 출장 및 연구년 중인 교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출장 중인 교수가 평의원이 아닌 교수에게 위임하고, 평의원이 아닌 교수가 위임장을 지참하고 평의원회에 대리 참석하여 의결 및 발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대리인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평의원회에서 의사 정족수에 위임장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예를 들어, 재적인원의 1/3도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임장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에서 성원이 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이 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를 고려하여 관련 위임장에 의한 성원 규정이 보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타 국립대학교의 평의원회 정족수 관련 규정 조사

- 강원대를 비롯한 총 9개의 거점대학과 공주대를 비롯한 지역대학 11개의 총 20개 국립대학교에 대한 학칙, 교수회 운영규정과 평의원회 규정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우리대학과 비교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내용은 다음 <표 17>과 같음.

<표 17> 정족수에 관한 학칙, 교수회 운영규정 및 평의원회 규정

대학	학칙·교수회 운영규정·평의원회 규정의 정족수 관련 조항
강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9조(전체교수회) 제3항 전체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제3항의 재적 전임교수에는 개회기일 현재 휴직자 및 장기출장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학칙 제19조의2(캠퍼스별 교수회) 제5항 의결은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제2항 및 제4항의 재적 전임교수에는 개회기일 현재 휴직자 및 장기출장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1항 전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전일까지 출장, 수업, 연가, 진료 등의 사유로 회의불참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한 의원은 개회를 위한 재적 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2.) 제2항 전체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22.)
경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 제6조(총회와 서면투표) 제3항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실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회원이란 재적 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대학	학칙·교수회 운영규정·평의원회 규정의 정족수 관련 조항
경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 제5조 (성립 및 의결) 제1항 교수회 총회는 서면위임한 교수를 포함한 재적 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이 경우 출장, 강의 및 진료중인 교수는 의사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 교수회 총회는 재적 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교수의 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6조(회의성립 및 의결) 제1항 회의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출장, 강의, 진료중인 평의원은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 본회의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재적 평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평의원 중 과반수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21조(의사·의결 정족수) 교수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휴직중인 교수는 재적 인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교수회 규정 제11조(회의 성립 및 의결) 제1항 교수회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한다. 제2항 교수회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공무출장 중인 자나 휴직자는 재적 회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위임장은 회의의 성립요건으로만 인정하고 의결을 위한 출석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원회 규정 제3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2항 교수평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금오공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 제11조(성립 및 의결) 제1항 교수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교수회의 개의 정족수 산출시 휴직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교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목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원회 규정 제10조 (의결정족수) 교수평의회 의결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전임 교수의 임명을 제외한 면직 등 신분에 관한 사항과 총장의 이의 제기에 의한 재의결 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대학	학칙·교수회운영규정·평의원회 규정의 정족수 관련 조항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회칙 제12조 (회의) 제4항 총회는 서면위임 및 전화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휴직자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는 재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항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출석위임자는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교수회 회칙 제20조 (평의원회의 소집) 제3항 평의원회의 회의는 서면위임 또는 전화위임을 포함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임자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회칙 제16조(정족수)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는 재적 회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 총회의 의결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7조(정족수) 대학평의원회는 재적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대학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전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 제1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제1항 총회는 재적 회원(재적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중인 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항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운영규정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항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휴가 중인 회원은 재적 회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 총회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회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항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총회에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대학	학칙·교수회운영규정·평의원회 규정의 정족수 관련 조항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15조(단과대학 등의 교수회의) 제4항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서면 위임을 포함하여 재직 전임교원(휴직자 및 해외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위임 수는 정원 정족수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 교수회 규정 제1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재직 회원(휴직자와 해외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의회 규정 제10조(회의) 제4항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 제24조(정족수) 교수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전체 교수회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실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회의 시작 1일 전까지 서면으로 교수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충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 제4조(정족수) 제1항 교수회는 재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휴직자 및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재직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 회원의 위임장은 회의성립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규정 제1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제1항 총회는 전체 회원(재직 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중인 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한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한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운영 규정 제13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평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1) 위임장 분석

- 조사된 20개 대학 중 위임과 관련된 내용은 10개 대학(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창원대, 부경대)의 교수회 운영규정에서, 그리고 1개 대학(한밭대)의 평의원회 규정에서 확인됨.

<표 18> 위임장 관련 조항

대학	규정	내용
경북대	교수회 규정 제6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실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경상대	교수회 규정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총회는 서면 위임한 교수를 포함한 재적 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교수회 총회는 재적 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공주대	교수회 규정 제1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함 ■ 위임장은 회의의 성립 요건으로만 인정하고 의결을 위한 출석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부경대	교수회 회칙 제12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의 회의는 서면 위임 또는 전화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임자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산대	교수회 회칙 제1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전북대	교수회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총회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회원에 산입하지 않음
제주대	교수회 규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서면위임 수는 성원 정족수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함

대학	규정	내용
창원대	교수회 규정 제2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교수회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실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함
충남대	교수회 규정 제4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위임장은 회의 성립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으로는 행사될 수 없음
충북대	교수회 규정 제1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봄 ■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한밭대	교수회 운영규정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교수회 규정에서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에 산입하고,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 위임장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교수회 운영규정에 있고 평의원회 규정에 없는 것은 평의원회 규정이 교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부경대의 경우 전화위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창원대의 경우 회의 시작 1일 전까지 서면으로 교수회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제주대의 경우 서면위임 수는 성원 정족수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함.
- 평의원의 관심도 저하 및 학사일정 상 이유로 인하여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평의원회 개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평의원회 규정에도 위임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수 인원에 의한 회의 진행, 중요한 안건의 소수 인원 결의 등 위임장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은 0.5회 불참으로 간주하거나 제주대와 같이 성원 정족수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음.

2) 정족수 분석

- 교수회 및 교수평의원회의 정족수에 대한 규정의 대부분은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된 20개 대학 중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 교수회 운영규정에 10개 대학(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부경대), 평의원회 규정에 2개 대학(강원대, 경상대)에서 명문화하고 있음.
-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는 휴직, 출장, 수업, 연가, 진료, 파견, 휴가, 강의 등이 있으며, 출장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출장, 3개월 이상 장기출장, 장기출장, 해외출장으로 출장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표 19> 정족수 분석 내용

대학	규정	내용
강원대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 전임교수에는 개회기일 현재 휴직자 및 장기 출장자를 포함하지 아니함(학칙) ■ 회의 개최 예정일 전일까지 출장, 수업, 연가, 진료 등의 사유로 회의 불참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보한 의원은 개회를 위한 재적 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경북대	교수회 규정 제6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회원이란 재적 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함
경상대	교수회 규정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강의 및 진료중인 교수는 의사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함(평의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공주대	교수회 규정 제1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출장 중인 자나 휴직자는 재적 회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금오 공과대	교수회 규정 제1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회의 개의 정족수 산출시 휴직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교원은 포함하지 않음
부경대	교수회 회칙 제12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자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는 재적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산대	교수회 회칙 제1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는 재적 회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남대	교수회 규정 제1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 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중인 자는 제외함
전북대	교수회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휴가 중인 회원은 재적 회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주대	교수회 규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자와 해외출장자 제외
충남대	교수회 규정 제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자 및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재적 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충북대	교수회 규정 제12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 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중인 자는 제외함

- 대리출석의 경우 전북대 교수회 운영규정에서만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총회에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평의원이 아닌 자가 위임장을 받아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평의원과 평의원을 선출한 교수들 사

이에는 위임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2조 제1항), 평의원은 제3자인 교수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평의원이 아닌 교수가 평의원회에 대리 참석하고자 할 경우 교수회 회장은 대리참석을 불허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대리참석이 아니라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은 평의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발언,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회의의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결의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5. 강릉원주대 규정 개선 방향

1) 위임장 규정 개선안

- 강릉원주대학교 평의회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라고 명문화할 수 있음.

<표 20> 우리 대학의 위임장 규정 개선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의사 및 의결) 본 회의는 재정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 ① 본 회의는 재정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위임장 인정 한도의 예시>

총 재적 인원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위임장 제출 인원	25	26	27	28	29	31	33	35	37	38
출석인원	13	12	11	10	9	7	5	3	1	0
위임장 제출 인원의1/2	13	13	14	14	15	16	17	18	19	19
의사정족수	26	25	25	24	24	23	22	21	20	19
위임장 제출 인원의 1/3	7.5	7.8	8.1	8.4	8.7	9.3	9.9	11	11	11
의사정족수	21	20	19	18	18	16	15	14	12	11

예를 들어, 총 재적평의원수가 38명이고, 참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위임장을 이용할 경우 만약 재적인원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면 참석인원이 1명이더라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사태 발생함. 그리고 3분의 1까지 인정한다면 참석인원이 11명이상 될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함.

2)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개선안

-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11조 제3항에 ‘휴직, 출장, 연가, 진료, 파견, 휴가, 강의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평의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21> 우리 대학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규정 개선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의사 및 의결) 본 회의는 재정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 ① 본 회의는 재정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③ 휴직, 출장, 연가, 진료, 파견, 휴가, 강의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평의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Ⅵ. 국립대학교의 교수회 임원 수당 지급

1. 조사 배경

- 교수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연구/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이러한 대학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와 비민주적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교수회의 역할이 인정되어 우리 대학의 교수회가 학칙화되었음.
- 우리 대학의 경우 학칙 제13장 제101조(교수회)에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수회 운영규정 ‘제14조(재정)’ 에 따르면 “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평의원회를 두며, 교수회의 재정은 본교 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우리 대학의 교수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캠퍼스별 각 1인), 사무처장 1인, 정책국장 1인을 두며, 그 직무로서 “제1항 회장은 교수회와 교수평의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3항 사무처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4항 정책국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나타나 있음.
- 그러나, 우리 대학 집행부는 교수회가 이미 학칙상 법정화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부속시설이 아니며(2015.12.16.에 개최된 제4차 교수회 평의원회 시 대학 측 발언), 타 대학에서 수당 지급 시 교육부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현재 교수회 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수회에 정책개발연구비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됨.
- 그러나 정책개발연구비에서 지급되는 것은 연구수행에 따른 인건비이지 교수회 활동에 대한 수당 성격은 아님.

- 또한, 교수회 임원들은 교수회 운영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과제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됨.

2. 타 국립대학교의 교수회 임원 수당(인건비) 지급 현황 조사

- 본 현황은 총 9개의 거점대학(강원대 등)과 11개의 지역대학(공주대 등) 총 20개교를 대상으로 학칙/교수회/평의원회 규정 및 해당 대학 교수회 회장단으로부터 설문지에 대한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수회 임원에 대한 수당 또는 인건비 지급 여부와 재원을 파악하였음.
- 20개교의 타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조직도(기구표)내 교수회/평의원회 등의 표기 여부를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함.
- 조사 내용 및 결과는 다음의 <표 22>와 같음.

<표 22> 대학별 교수회 임원 수당 지급 현황

대학	규정 내 임원 수당 관련 내용 표기 현황 (학칙, 교수회 운영규정, 교수평의원회 규정)	실제 지급 여부	수당 재원		
			대학회계	정책과제	교수회비
강원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제16조(운영위원회) 제6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22)				
경북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경상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제12조(수당 등)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학	규정내 임원 수당 관련 내용 표기 현황 (학칙, 교수회 운영규정, 교수평의회 규정)	실제지급여부	수당 재원		
			대학회계	정책과제	교수회비
공주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제35조(재정) 제1항 교수회의 재정은 교수회비(7,000원/월/명) 및 본대학교의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항 교수회의 임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 내용 없음				
군산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금오공과대	■ 관련 내용 없음	미지급			
	■ 관련 내용 없음				
	■ 제15조(수당 등) 제1항 평의회와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 업무 수행 중에 과제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제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목포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부경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부산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제15조(예산지원) 총장은 대학평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평의회에 수당 등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안동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전남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대학	규정내 임원 수당 관련 내용 표기 현황 (학칙, 교수회 운영규정, 교수평의원회 규정)	실제지급여부	수당 자원		
			대학회계	정책과제	교수회비
전북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제주대	■ 관련 내용 없음	미지급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창원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항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인원 및 예산을 지원한다. 제3항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인사 및 평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 회의비 그 밖의 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충남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충북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 관련 내용 없음				
	■ 제8조(의원의 대우) 평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경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한국교통대	■ 관련 내용 없음	지급			○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한밭대	■ 관련 내용 없음	미지급			
	■ 관련 내용 없음				
	■ 관련 내용 없음				

3. 조사 내용 분석 및 평가

1) 교수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 분석

- 20개교를 대상으로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대 등 총 20개교 전체가 설문에 응답함<표 23>.

<표 23> 대학별 설문 응답 현황

	설문에 응답한 대학
대학명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 조사 대상 20개교 중 대학 내 조직도(기구표)내 교수회 관련 기구의 표기 형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대학별 홈페이지 내 조직도(기구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표 24> 대학별 조직도내 교수회 관련 기구 표기유형

	조직도 내 표기유형						
	평의원회	교수회	교수회/평의원회	교수회의	전교교수회	전체교수회/교수평의회	표기 없음
대학명	강원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전남대‡ 창원대*	경북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공주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경상대 목포대 충남대 충북대
비고	*: 대학평의원회 †: 교수회평의원회 ‡: 교수회평의원회 (심의기관)	††:교수회 (심의기관)					

※ 20개교 모두 부속시설에 ‘평의원회, 교수회, 교수회의, 전교교수회, 전체교수회, 교수평의회’ 등을 표기한 대학은 없음

※ 강릉원주대학교는 ‘교수회’로 표기되어 있음.

- 20개교 중 17개교(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에서는 교수회 임원에 대하여 수당 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수당(또는 인건비) 지급이 되는 17개교 중 재원이 대학의 보직수당인 경우는 3개교(강원대, 부경대, 전남대), 정책과제인 경우는 9개교(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충남대)이며, 교수회 회비인 경우는 4개교(부산대, 전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임. 교수회 회비와 정책과제의 조합인 경우는 1개교(충북대)로서, 교수회 회장과 부회장은 정책과제, 사무국장은 교수회 회비에서 지급.
- 대상 20개교 중 3개교(금오공과대, 제주대, 한밭대)는 현재 수당 미지급으로 파악됨. 그러나 이들 대학에서도 다른 재원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또는 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이유로 ‘미지급’으로 답변 자료를 보내 왔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임.
-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상기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아래 <표 25>와 같음.

<표 25> 대학별 인건비나 수당 지급 현황 및 재원

재원 구분	정책과제 인건비	교수회 회비	대학회계†	수당 미지급 대학
대학명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총 11개교)	부산대, 전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충북대* (총 5개교)	강원대, 부경대, 전남대 (총 3개교)	금오공과대 한밭대 제주대# (총 3개교)
비고	* : 정책과제(회장, 부회장)+교수회 회비(사무국장) ** : 사무처장 2인에게 지급 † : 대학회계(보직수당으로 지급) # : 정책과제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으나, 수당 성격은 아님.			

4. 강릉원주대 규정 개선 방향

- 현재의 국립대학교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1. 인적 경비(관), 3. 실비변상 인적경비(항), 1. 직무수행경비(목)’은 반드시 정부지원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명시이 없기에,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보직수행경비와는 별도로 대학의 장이 대학의 학칙에 의해 설치된 기구의 직책을 맡은 교직원에게 대해 자체수입금으로 직책수행경비를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우리 대학의 교수회가 학칙상 법정기구로 인정되고 있고, 교수회 운영규정 제 14조(재정) 제3항에 “교수회 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에 교수회가 대학의 부속시설로 조직 및 편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행정 오류로 판단됨.
- 교수회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개발은 본연의 직무이지만,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비정기적인 연구비를 통한 인건비의 형태로 지급함은 본부처실장을 포함한 대학 보직자들과 교수회 임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학의 법정 기구인 교수회 임원에 대한 직책 수당을 대학 여타 보직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대학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사료됨.

VII. 맺는 말

- 우리 대학 교수회는 2015년 8월 27일 학칙 제1539호를 통하여 동년 9월 18일 법정 교수회로 출범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규정의 미비로 교수회에 의한 예·결산 심의권 및 규정 제·개정을 위한 최종 심의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수회 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평의원 규정 내 정족수 관련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조사는 20개 타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학칙, 교수회 및 평의원회 규정을 조사하고, 설문조사와 전화질의 등을 통하여 상기 사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학에서의 관련 규정 등을 개선 정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조사 대상 대학 중 2015년 규정 제·개정이 교무회의를 거친 후 교수회에서 심의되는 경우가 8개교, 교수회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6개교로, 교수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대학이 2개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교수회가 균형 잡힌 대학의사 결정권과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견제 기능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서도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하고 교무회의 심의와 교수평의원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향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최종 의사결정권과 행정집행권은 총장에게 있으므로, 교수회에게는 단지 규정 제·개정에 대한 최종 심의권이 부여되는 체제가 될 것임.
 2. 전체 조사 대상 국립대학 20개교 중 약 55%에 해당하는 11개 대학에서 교수회의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재정회계법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이 있다 하더라도 교수회뿐만 아니라 교무회 등 대학 내 다른 기구에서의 심의 검토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고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도 합리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위하여 재정위원회 전후 예·결산 심의를 평의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위임장 관련 규정 개선안으로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사 및 의결)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① 본 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③ 휴직, 출장, 연가, 진료, 파견, 휴가, 강의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평의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4. 학칙상에 교수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고, 아울러 대학의 법정 기구인 교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도 교수회 임원에 대한 직책 수당을 대학 내 여타 보직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대학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사료됨.

VIII. 별첨

<별첨 1> 조사 대상 국립대학의 홈페이지 주소

대학	홈페이지
강릉원주대	http://www.gwnu.ac.kr/
강원대	http://www.kangwon.ac.kr/
경북대	http://www.knu.ac.kr/
경상대	http://www.gnu.ac.kr/
공주대	http://www.kongju.ac.kr/
군산대	http://www.kunsan.ac.kr/
금오공과대	http://www.kumoh.ac.kr/
목포대	http://www.mokpo.ac.kr/
부경대	http://www.pknu.ac.kr/
부산대	http://www.pusan.ac.kr/
순천대	http://www.sunchon.ac.kr/
안동대	http://www.andong.ac.kr/
전남대	http://www.jnu.ac.kr/
전북대	http://www.jbnu.ac.kr/
제주대	http://www.jejunu.ac.kr/
창원대	http://www.changwon.ac.kr/
충남대	http://www.cnu.ac.kr/
충북대	http://www.chungbuk.ac.kr/
한경대	http://www.hknu.ac.kr/
한국교통대	http://www.ut.ac.kr/
한밭대	http://www.hanbat.ac.kr/